

## 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91호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2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, 관할역 관리책임자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·보관하도록 하는 「철도안전법」(법률 제19984호, 2024. 1. 9 공포, 2024. 4. 1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작성·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경우 운행안전관리자등이 작성·보관하여야 하는 내용 규정 (안 제76조의7 제2항)
- 나.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서류 제출기한 명확화 (안 제26조 제1항)
- 다. 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제출의 면제 가능한 경우 규정 (안 제92조의6 제2항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
- 전자우편 : beyes@korea.kr
- 팩스 : 044-201-4825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(044-201-48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